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4.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98. 4. 18

다. 상 정 일 자 : '98. 4. 17 (제6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자 : 재무과장 정 부 웅

나. 개정사유

ㅇ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등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ㅇ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중 제2항에서 자동차세 면세대상을 각호로 구체적으로 규정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ㅇ 현행 제2항에서 각호로 규정하였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4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하였음.

ㅇ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도 제2조와 같이 자동차세 면세대상을 각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항과 제2항의 자구의 일부를 수정 정비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길중)

ㅇ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개정조례로써,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장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요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신 설)	4. 이륜자동차
(신 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신 설)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신 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신 설)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신 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